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46호 2024. 1. 10.(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76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 개정규정 ..... 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5호 도로명주소 고시 ..... 8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15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21호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 .....	9
거창군 공고 제2024-18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3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13
거창군 공고 제2024-20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7, 소로2-70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	16
거창군 공고 제2024-26호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18
거창군 공고 제2024-27호	2024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 .....	30
거창군 공고 제2024-33호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5
거창군 공고 제2024-35호	2024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40
거창군 공고 제2024-36호	2024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	41
거창군 공고 제2024-37호	2024년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	43
거창군 공고 제2024-44호	가조 수포대(212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	44
거창군 공고 제2024-46호	김천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 .....	50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24년 1월 10일

거창군 훈령 제476호

###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복지점수 부여)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 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근속 복지점수: 근속기간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 다만,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 의원에게는 2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
3. 가족 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 각 50점, 자녀 1명당 50점,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1명당 150점 배정
4. 출산축하 복지점수: 해당연도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첫째 자녀 200점, 둘째 자녀 300점, 셋째 이후 자녀 500점 추가 지급. 이 경우 신청에 따른다.
5. 상조 복지점수: 해당연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소속공무원에게 100점 추가 지급. 이 경우 신청에 따른다.

6. 생일축하 복지점수: 주민등록상 생일에 해당하는 달 소속공무원에게 50점 추가 지급. 다만, 휴직자·파견자 등 거창군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 ④ 개인별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 복지점수와 가족 복지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 및 상조 복지점수 마감하는 달 사안 발생자는 다음 해로 이월 신청 가능하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4조(복지점수 부여) ①</b>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p> <p>1. 기본 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p> <p>2. 변동 복지점수: 근속 연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복지점수</p> <p><b>②</b>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1. 기본 복지점수</p> <p>2. 변동 복지점수</p> <p>가. 근속 복지점수: 근속기간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 다만,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 의원에게는 2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p> <p>나. 가족 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명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1명당 150점씩 배정</p> <p>다. 출산축하 복지점수: 해당연도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첫째 자녀 200점, 둘째 자녀 300점, 셋째 이후 자녀 500점 추가 지급. 이 경우 신청에 따른다.</p> <p>라. 상조 복지점수: 해당연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소속공무원에게 100점 추가 지급. 이 경우 신청에 따른다.</p>	<p><b>제4조(복지점수 부여) ①</b>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1. 기본 복지점수: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p> <p>2. 근속 복지점수: 근속기간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 다만,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 의원에게는 200점을 일률적으로 배정</p> <p>3. 가족 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부모 각 50점, 자녀 1명당 50점,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1명당 150점 배정</p> <p>4. 출산축하 복지점수: 해당연도 출산한 소속공무원의 첫째 자녀 200점, 둘째 자녀 300점, 셋째 이후 자녀 500점 추가 지급. 이 경우 신청에 따른다.</p> <p>5. 상조 복지점수: 해당연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소속공무원에게 100점 추가 지급. 이 경우 신청에 따른다.</p> <p>6. 생일축하 복지점수: 주민등록상 생일에 해당하는 달 소속공무원에게 50점 추가 지급. 다만, 휴직자·과건자 등 거창군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p> <p><b>②</b>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p>

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2항제2호나목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⑤ 개인별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 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다.

④ 개인별 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기간 중 근속 복지점수와 가족 복지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

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출산축하 및 상조 복지점수 마감하는 달 사안 발생자는 다음 해로 이월 신청 가능하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 번호	2024-
----------	-------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군의원 제안과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의결로 직원 생일 축하 복지점수 신설과 출산 축하·상조 복지점수 이월 신청 명문화

## 2. 주요내용

가. 복지점수 부여 기준 개정(안 제4조)

- 1) 생일축하 복지점수 신설
- 2) 출산 축하, 상조 복지점수 이월 신청 명문화
- 3) 조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
- 2) 「지방자치법」 제116조
- 3) 「거창군 공무원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예산조치: 2024년도 1,501백만원 예산 편성

다. 합 의

- 1) 거창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 완료
- 2)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개정안 검토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0.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2230 등 6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19 등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21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2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10.

## 거창군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도시계획시설	웅양면 운평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3-121호선)	웅양	죽림	소로	3	121	456	4.5~6	3,287	웅양면 죽림리 198-2 ~ 1-1	경고173호 (1980.7.14.)	2023. ~ 2024.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9,590	3,287					
1	웅양면 죽림리	198-2	도	37	33	-	거창군			
2	웅양면 죽림리	198-3	대	5	5	-	거창군			
3	웅양면 죽림리	200-1	대	3	3	-	거창군			
4	웅양면 죽림리	166-6	대	1	1	웅양면 죽*리 1*5	김*용			
5	웅양면 죽림리	166-5	대	15	15	웅양면 죽*리 1*7	정*호 외 3인			
6	웅양면 죽림리	167-4	전	39	39	웅양면 죽*리 1*7	이*석			
7	웅양면 죽림리	1162	도	1,499	935	-	국 (국토교통부)			
8	웅양면 죽림리	195-2	도	166	117	-	거창군			
9	웅양면 죽림리	166-3	도	26	26	-	거창군			
10	웅양면 죽림리	167-2	도	83	50	-	거창군			
11	웅양면 죽림리	167-1	전	33	33	웅양면 죽*리 1*7	이*석			
12	웅양면 죽림리	157	대	217	217	-	거창군			
13	웅양면 죽림리	195-9	도	88	88	-	거창군			
14	웅양면 죽림리	155	대	171	171	-	거창군			
15	웅양면 죽림리	154-3	대	317	317	-	거창군			
16	웅양면 죽림리	154-2	도	20	7	-	거창군			
17	웅양면 죽림리	114-3	도	7	4	-	거창군			
18	웅양면 죽림리	114-4	대	7	7	-	거창군			
19	웅양면 죽림리	144-10	대	58	58	울산광역시 *구 엄*로 4*9,11*동1*02호	최*자			
20	웅양면 죽림리	143-3	도	457	231	-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9,590	3,287					
21	웅양면 죽림리	144-11	대	47	47	-	거창군			
22	웅양면 죽림리	143-6	전	70	70	-	거창군			
23	웅양면 죽림리	143-4	전	423	423	-	거창군			
24	웅양면 죽림리	120-1	임	7	7	-	거창군			
25	웅양면 죽림리	121-3	도	44	1	-	거창군			
26	웅양면 죽림리	131-3	도	26	2	-	거창군			
27	웅양면 죽림리	132-3	도	86	6	-	거창군			
28	웅양면 죽림리	132-7	전	3	3	-	거창군			
29	웅양면 죽림리	132-5	도	33	33	-	거창군			
30	웅양면 죽림리	132-6	전	22	22	-	거창군			
31	웅양면 죽림리	133-2	도	79	79	-	거창군			
32	웅양면 죽림리	133-3	전	71	71	-	거창군			
33	웅양면 죽림리	146-10	대	3	3	거창군 주*면 보*길 8*	김*섭			
34	웅양면 죽림리	146-2	대	199	8	-	국 (기획재정부)			
35	웅양면 죽림리	140-8	창	28	28	-	거창군			
36	웅양면 죽림리	140-6	대	33	33	-	거창군			
37	웅양면 죽림리	135-4	도	883	77	-	거창군			
38	웅양면 죽림리	140-7	대	15	15	-	거창군			
39	웅양면 죽림리	1153-12	구	139	1	-	국 (농림수산식품부)			
40	웅양면 죽림리	1-1	구	4,130	1	-	국 (농림수산식품부)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96), FAX(055-940-3579), E-mail(kstar7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끝".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3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2-13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10.

## 거창군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도시계획시설	현대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거창	가지상림	중로	2	13	265	15	4,896	거창읍 가지리 1333-23번지 ~ 거창읍 상림리 410-12번지	건고194호 (1976.12.7.)	2023. ~ 2024.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9,228	4,896					
1	거창읍 가지리	1333-23	과	69	13	-	거창군			
2	거창읍 가지리	산 101-8	임	107	14	-	거창군			
3	거창읍 가지리	1333-21	과	643	507	-	거창군			
4	거창읍 가지리	1333-6	과	135	76	-	거창군			
5	거창읍 가지리	1338-4	답	570	542	-	거창군			
6	거창읍 상림리	754-2	구	2	2	-	국 (기획재정부)			
7	거창읍 상림리	754	구	345	173	-	국 (농림수산식품부)			
8	거창읍 상림리	408-4	도	1	1	경상남도 함*군 안*면 황*리	김*규			
9	거창읍 상림리	408-5	전	538	531	-	거창군			
10	거창읍 상림리	산15-4	임	38	38	경상남도 거*군 거*읍 상*리 6*0	류인협			
11	거창읍 상림리	409-2	전	13	13	-	거창군			
12	거창읍 상림리	409-3	전	648	648	-	거창군			
13	거창읍 상림리	산15-5	임	495	495	경상남도 거*군 거*읍 상*리 6*0	류*렬 외 6인			
14	거창읍 상림리	410-11	전	217	217	-	거창군			
15	거창읍 상림리	411-4	전	674	587	-	거창군			
16	거창읍 상림리	410-18	전	819	14	-	거창군			
17	거창읍 상림리	412-17	전	19	19	-	거창군			
18	거창읍 상림리	<b>409-1</b>	전	1184	474	경상남도 거*군 웅*면 노*길 2**	이*화 외 1인			
19	거창읍 상림리	<b>산15-3</b>	임	923	350	경상남도 거*군 거*읍 상*리 6*0	류*렬 외 6인			
20	거창읍 상림리	<b>410-12</b>	전	1788	182	경상남도 거*군 거*읍 상*리 6*0	류*렬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96), FAX(055-940-3579), E-mail(kstar7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끝".

거창군 공고 제2024 - 20호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7, 소로2-70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7호선,소로2-70호선)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10.

## 거창군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도시계획시설	거창읍 김천리 상아주택 일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소로2-70호선)	거창	김천	소로	2	67	108	6	1,808	거창읍 김천리 207 ~ 213-19	경고256호 (1977.4.24.)	2023. ~ 2024.
					2	70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4,874	1,808					
1	김천리	207	전	462	149	거*군 거*읍 거*로 *길1*,80*호	박*선			
2	김천리	213-8	임	562	562	-	거창군			
3	김천리	산8-35	임	1,124	50	거*군 위*면 송*로 3*-3*	이*기 외 1인			
4	김천리	213-7	임	1,683	81	거*군 거*읍 수*로 2***,*층	**개발(주)			
5	김천리	213-17	전	99	99	-	거창군			
6	김천리	213-11	임	370	370	-	거창군			
7	김천리	산9-1	도	139	139	-	거창군			
8	김천리	213-13	임	202	202	-	거창군			
9	김천리	213-19	전	156	156	-	거창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96), FAX(055-940-3579), E-mail(kstar7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끝".

##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근무할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거창군수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담당 사무보조	1명	지적민원창구 제증명발급 및 사무보조 등

### 2. 응시자격 요건

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제5항 및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거창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다.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라.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거창군으로 되어 있는 자
- 마. 우대요건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3. 근무조건

- 가. 신 분 : 기간제근로자
- 나. 기 간 : 2024. 1. 22. ~ 11. 21.
- 다. 근무시간 : 주5일, 1일 7시간(09:00 ~ 17:00)
- 라. 보 수 : 1일 69,020원(시간당 9,860원), 주휴·월차수당 등 별도
-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근로자 부담금 원천징수)

### 4. 시험방법

-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심사
  - 1) 자격증 소지여부 및 경력, 병역 관련 등 확인
  - 2)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3)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 및 직무관련 자격증, 경력, 자기소개서 등 심사
-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5. 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 가.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1) 모집공고 : 2024. 1. 5. ~ 1. 11.
  - 2) 원서접수 : 2024. 1. 5. ~ 1. 11.(09:00 ~ 18:00)

가) 접수장소 : 거창군청 1층 민원소통과 지적담당(평일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본인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1차(서류심사) : 2024. 1. 12. ~ 1. 17.

-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등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다. 2차(면접시험) : 2024. 1. 18.(목)

1)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 심사내용 : 복무 및 근무자세, 직무분야 전문지식 등 점검

※ 면접 응시자 준비사항 : 신분증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1. 19.(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1) 근무개시(예정)일 : 2024. 1. 22.(월)

2) 위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추가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서식1) 1부

나. 자기소개서(서식2) 1부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1부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4)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마. 자격검증 동의서(서식5) 1부(해당자만)

바. 해당 분야 응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만)

사.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함

##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지정된 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마.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바.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사. 채용서류의 반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1)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팩스(☎055-940-3288)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합니다. 단, 등기우편으로 반환을 청구할 경우 비용은 구직자 부담으로 합니다.
  - 2)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관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 아. 채용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담당(☎940-33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담당자 기재)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1	[서식1] 응시원서	
2	[서식2] 자기소개서	
3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5	[서식5] 자격검증 동의서(해당자만)	
6	해당분야 응시 자격증 사본 및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만)	
7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란에 “○” 표시

[서식1]

# 응 시 원 서

응시분야 :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 접수번호: (담당자 기재)
-------------------------	------------------

인 적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휴대폰		

경력 사항	직 장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자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우대 사항	우대사항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거 창 군 수 귀하

## 응시원서 작성요령(뒷면)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 <작 성 요 령>

- ① 주 소 :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
- ② 휴 대 폰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 ③ 자 격 : 운전면허 등 기타 자격증 기재
- ④ 경 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서식3]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서류전형·면접시험)에 필요한 인적사항, 자격·경력확인 조회를 목적으로 함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 자격, 경력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관련 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 폐기처분함

라. 동의의 거부

응시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항목 거부 시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선택항목 및 제3자 제공 거부 시 가점 미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수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 기관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자격사항 등]

2024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식4]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직무분야 :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지적담당 사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자로서, 거창군에서 채용하는 시험에 따른 경력, 자격, 면허 등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진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거창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거창군수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공고

거창군에서는 거창읍 중앙리, 상림리, 대동리, 대평리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지 및 나대지 등을 매입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일

## 거 창 군 수

### □ 매입대상지 선정 기준

- ① 주차환경이 열악한 거창읍 중앙·상림·대동·대평리 등 저층 주택 및 나대지
- ② 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공고일 현재 건축한지 30년 (사용승인일 기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단, 30년 미만은 최저점 부여)
- ③ 폭 4m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여야 한다.
- ④ 대지면적이 60㎡이상으로 한다.
- ⑤ 대지경계 등 부동산 물권권리에 하자가 있는 필지는 제외한다.
- ⑥ 기타 주차장법 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⑦ 신청 토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일 경우는 제외한다.

### □ 매입필지 가점 적용 기준

- ① 나대지나 폐가는 가점 적용한다(단, 건축 경과년도와 무관함)
- ② 면적인접필지와 병행 신청할 경우 합필면적이 크거나 공지 인접필지는 가점 적용하며, 기타 지역적인 균형배치 및 인근의 공영주차시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건축물 건축 경과년도(잔존가치가 적은 건축물 등)에 따라 가점 적용한다.
- ④ 기타 현장조건(경사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등)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한다.

## □ 매입대상지 선정 및 계약 방법

- 매수를 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필지를 심의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심사 하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 후 계약한다.
- 매입필지 선정 시 매입계획 필지보다 약30%를 추가 선정하여 예비 매입필지로 지정 후 매매계약 포기자가 있을 경우 점수 순으로 이를 대체하여 계약한다. 단, 신청 후 포기할 때 신청 기간으로부터 1년간 재신청이 불가함.

## □ 기타사항

- 매매대상은 소재지상의 모든 물권을 포함한다.
-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 등기상 권리하자가 없어야 소유권을 이전하며,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명도(거주자 퇴거 포함) 하여야 한다.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은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교통과로 문의(전화 940-338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 신청기간 : 2024. 1. 8. ~ 2024. 2. 8.(토, 일, 공휴일은 제외)

□ 신청장소 : 거창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거창군청 3층)

□ 신청방법 : 신청 장소에 직접 신분증 지참 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 구비서류

- 신청서 (별지1)
- 건물(나대지)사진(별지2)
-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이력 포함)

【별지 1】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접수 일자		③ 건물 주 거주여부	(거주, 비거주)
④ 물건소재지				⑤ 건축물소유자 (토지소유자와 다를 경우)	
⑥ 토지소유자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⑦ 도로폭	m		⑧ 구조	철근콘크리트 ( ) 벽돌 ( ) 시멘트블럭 ( ) 기타:	
⑨ 대지면적	m <sup>2</sup>		⑩ 건물연면적	m <sup>2</sup> (지상 층/지하 층)	
⑪ 건물사용 승인 일	년	월	일	⑫ 임대가구수	가구
* 첨부서류	<input type="checkbox"/> 건물(나대지)사진(별지2에 전경.근경 부착)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지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초본(과거이력 포함)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거창군의 현지 실태조사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본 부지의 매입을 신청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24년    월    일</p>					
신청인 (소유자)	성 명	(인)			
신청인 (대리인 신청시)	성 명	(인)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소유자의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창군수 귀하					



# 단독주택지(나대지) 매입신청 위임장

- 물건 소재지 :
- 대 지 면 적 :                    m<sup>2</sup>
- 주 택 유 형 :
- 건축 연면적 :                    m<sup>2</sup>(지상    층/지하    층)
- 소유자 성명 :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상기 단독주택지(나대지)의 매입 신청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아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4.        .

붙 임 : 토지(건물) 소유자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수임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거창군수 귀하

【별지 2】

# 건물(나대지) 사진

전 경 (주변 건물보이게)

근 경

거창군 공고 제2024-33호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액 및 가맹점 등록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금액 증액(안 제3조)
    -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연 10만원 ⇒ 연 36만원
    -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연 20만원 ⇒ 연 60만원
  - 나. 가맹점 등록대상 추가(안 제7조제2호)
    - 1)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 추가
4. **입법예고기간** : 2024. 1. 5. ~ 1. 22.
5.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붙임

## 6.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0)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라. 전화 : 055-940-8702, 팩스 055-940-8905, 이메일 tin018@korea.kr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자치법규명 : 「거창군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 100천원”을 “연 360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 200천원”을 “연 600천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서점”을 “서점, 스포츠용품점, 편의점, 카페, 마트, 음식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붙임 3]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거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시행 2023. 4. 26.] [조례 제2774호]

**제3조(지원 대상 및 활동)**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문화·체육 활동
  2.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3. 이미용 등 일상유지를 위한 필수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활동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금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3. 그 밖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확인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한다.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단위 : 명)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 서 주민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b>52,486</b>	52,444	42	<b>5,249</b>	청구권자 총수의 1/10 이상

2024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거창군수 및 거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 군 수

구 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15/100)	읍.면별 최소서명인 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조건
계	<b>51,831</b>	<b>7,775</b>	<del>                    </del>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4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 서명인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거창읍	32,700		519	
주상면	1,447		218	
웅양면	1,694		255	
고제면	1,316		198	
북상면	1,438		216	
위천면	1,770		266	
마리면	1,843		277	
남상면	2,201		331	
남하면	1,342		202	
신원면	1,450		218	
가조면	3,343		502	
가북면	1,287		194	

■ 군의회 의원

선거구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20/100)	읍.면별 최소 서명인 수	비 고
<b>합 계</b>		<b>51,831</b>			
가 선거구	<b>거창읍</b> (상동 제외)	<b>26,820</b>	<b>5,364</b>	5,364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 아야 함
나 선거구	<b>계</b>	<b>15,388</b>	<b>3,078</b>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3개 읍면 이상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주상면	1,447		154	
	웅양면	1,694		154	
	고제면	1,316		154	
	북상면	1,438		154	
	위천면	1,770		154	
	마리면	1,843		154	
	거창읍(상동)	5,880		154	
다 선거구	<b>계</b>	<b>9,623</b>	<b>1,925</b>		○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 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되, 2개 면 이상에서 ·면별 각 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남상면	2,201		97	
	남하면	1,342		97	
	신원면	1,450		97	
	가조면	3,343		97	
	가북면	1,287		97	

2024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권자 총수			청구에 필요한 연 서 주민수	비 고
계	주민등록자	외국인		
52,483	52,444	39	1,050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2024년 1월 9일

거 창 군 수

## 가조 수포대(212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거창군에서 가조면 도리 일원에 시행예정인 『가조 수포대(212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사업인정에 대한 협의 및 의견청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거창군수

###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거창군수(건설교통과장)
- 나.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 업 명 : 가조 수포대(212호선) 확·포장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도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L=900.0m, B=6.5m

###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가조면 도리 546-4번지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4.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안전건설국 건설교통과  
⇒ ☎055-940-3553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개별통지 예정

##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인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과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 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나.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m <sup>2</sup> )	(m <sup>2</sup> )			
	합계			67688	12111			
1	가조면 도리	1529-10	천	16,878	268	-	국(환경부)	
2	가조면 도리	544-2	도	2	1	-	전*희	
3	가조면 도리	545-3	도	76	40	-	박*수	
4	가조면 도리	545-7	도	127	87	-	박*수	
5	가조면 도리	545-6	도	10	5	-	박*수	
6	가조면 도리	546-4	도	58	31	-	거창군	
7	가조면 도리	546-5	도	341	306	-	거창군	
8	가조면 도리	546-2	전	875	52	-	박*훈 외1	
9	가조면 도리	548-8	도	54	45	-	거창군	
10	가조면 도리	546-3	전	1,280	3	-	박*환	
11	가조면 도리	546-7	도	4	4	-	박*분	
12	가조면 도리	548-3	임	459	1	-	박*오	
13	가조면 도리	548-2	도	157	1	-	진*무	
14	가조면 도리	548-11	도	7	4	-	진*무	
15	가조면 도리	548-1	임	689	1	-	풍기*씨화*계*공 파종중	
16	가조면 도리	548-10	임	25	15	-	풍기*씨화*계*공 파종중	
17	가조면 도리	548-4	도	60	60	-	거창군	
18	가조면 도리	548-5	도	371	227	-	거창군	
19	가조면 도리	548-9	도	56	56	-	거창군	
20	가조면 도리	548-12	임	56	43	-	박*오	
21	가조면 도리	549-1	답	4	4	-	진*성	
22	가조면 도리	1529-82	도	50	46	-	국(국토교통부)	
23	가조면 도리	1529-175	천	84	45	-	국(국토교통부)	
24	가조면 도리	1529-83	구	238	92	-	국(국토교통부)	
25	가조면 도리	1529-86	천	3,239	526	-	국(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편입	소유자		비고
				면적	면적	주소	성명	
				(m <sup>2</sup> )	(m <sup>2</sup> )			
26	가조면 도리	1529-162	도	51	51	-	국(국토교통부)	
27	가조면 도리	1529-84	제	270	250	-	국(국토교통부)	
28	가조면 도리	609	천	822	421	-	박*미	
29	가조면 도리	609-1	천	112	107	-	한국농어촌공사	
30	가조면 도리	609-2	천	42	10	-	진*목	
31	가조면 도리	1529-81	천	3,119	150	-	국(환경부)	
32	가조면 도리	1551	도	68	68	-	국(국토교통부)	
33	가조면 도리	1551-6	도	61	20	-	국(국토교통부)	
34	가조면 도리	1529-178	제	157	21	-	국(국토교통부)	
35	가조면 도리	1529-78	도	139	49	-	국(국토교통부)	
36	가조면 도리	1529-77	천	36	1	-	국(환경부)	
37	가조면 도리	1552-2	도	336	27	-	국(국토교통부)	
38	가조면 도리	1551-7	도	132	50	-	국(국토교통부)	
39	가조면 도리	609-5	천	51	51	-	거창군	
40	가조면 도리	609-3	천	123	123	-	한국농어촌공사	
41	가조면 도리	609-4	천	30	30	-	진*목	
42	가조면 도리	608-1	천	294	252	-	박*미	
43	가조면 도리	608-4	천	241	241	-	한국농어촌공사	
44	가조면 도리	608-5	천	928	325	-	경상남도	
45	가조면 도리	1529-163	도	40	40	-	국(국토교통부)	
46	가조면 도리	522-2	답	3,157	165	-	이*희	
47	가조면 도리	1529-88	천	244	244	-	국(환경부)	
48	가조면 도리	1529-164	도	34	34	-	국(국토교통부)	
49	가조면 도리	1529-87	제	741	342	-	국(환경부)	
50	가조면 도리	1529-89	천	65	29	-	국(기획재정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m <sup>2</sup> )	(m <sup>2</sup> )	주소	성명	
51	가조면 도리	1529-90	천	325	15	-	국(기획재정부)	
52	가조면 도리	1529-104	천	5,269	566	-	국(환경부)	
53	가조면 도리	601	답	1,762	67	-	박*룡	
54	가조면 도리	1529-165	도	161	161	-	국(국토교통부)	
55	가조면 도리	1529-106	천	2,928	1,550	-	국(기획재정부)	
56	가조면 도리	1529-166	도	75	75	-	국(국토교통부)	
57	가조면 도리	1529-105	제	1,729	1,627	-	국(환경부)	
58	가조면 도리	1529-107	도	44	14	-	국(국토교통부)	
59	가조면 도리	603-12	답	140	31	-	경상남도	
60	가조면 도리	603-6	답	2,668	11	-	김*태	
61	가조면 도리	1551-9	도	48	8	-	국(국토교통부)	
62	가조면 도리	1551-5	도	493	21	-	국(국토교통부)	
63	가조면 도리	1529-108	천	415	222	-	국(기획재정부)	
64	가조면 도리	218-4	답	122	75	-	성*숙	
65	가조면 도리	218-16	답	417	170	-	권*운	
66	가조면 도리	218-9	도	553	553	-	거창군	
67	가조면 도리	218-12	답	1,413	318	-	경상남도	
68	가조면 도리	219-6	답	4,711	47	-	김*락	
69	가조면 도리	219-5	답	288	5	-	김*락	
70	가조면 도리	1541	도	1,980	114	-	국(국토교통부)	
71	가조면 도리	218-8	도	313	253	-	거창군	
72	가조면 도리	218-2	답	241	3	-	김*출	
73	가조면 도리	218-3	답	953	92	-	이*석 외1인	
74	가조면 도리	218-11	도	84	55	-	거창군	
75	가조면 도리	218-10	답	69	2	-	경상남도	
76	가조면 도리	1529-187	천	125	1	-	국(국토교통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m <sup>2</sup> )	(m <sup>2</sup> )	주소	성명	
77	가조면 도리	1529-119	도	103	17	-	국(국토교통부)	
78	가조면 도리	1529-120	천	880	40	-	국(기획재정부)	
79	가조면 도리	1529-124	천	1,004	219	-	국(기획재정부)	
80	가조면 도리	1529-167	천	170	170	-	국(환경부)	
81	가조면 도리	1529-123	제	210	132	-	국(환경부)	
82	가조면 도리	139-1	천	30	17	-	신*윤	
83	가조면 도리	1529-125	제	228	186	-	국(환경부)	
84	가조면 도리	1529-126	구	58	9	-	국(국토교통부)	
85	가조면 도리	1529-168	구	33	29	-	국(국토교통부)	
86	가조면 도리	1529-191	천	114	22	-	국(국토교통부)	
87	가조면 도리	1529-169	천	132	34	-	국(환경부)	
88	가조면 도리	1529-128	제	238	61	-	국(환경부)	
89	가조면 도리	217-1	도	185	4	-	거창군	
90	가조면 도리	217-2	대	254	1	-	왕*순	
91	가조면 도리	217-3	대	177	4	-	왕*순	
92	가조면 도리	217-5	대	30	30	-	김*락	
93	가조면 도리	217-6	대	2	2	-	거창군	
94	가조면 도리	217-7	대	3	3	-	거창군	
95	가조면 도리	217-8	대	16	9	-	거창군	
96	가조면 도리	217-9	대	2	2	-	거창군	

## 김천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9일

### 거 창 군 수

1. 목적 :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자연 재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4. 01. 9. ~ 2024. 01. 28.(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01. 9. ~ 2024. 01. 28.(20일간)
4. 공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치	지정개요			지정사유	비고
		유형	등급	면적		
김천리 지구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443번지 일원	침수 위험	나	43,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위천 좌안의 제방고 및 여유고 부족 구간은 주거지가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지구.</li> <li>- 거창위천 수위 상승 시 일부구간의 우수관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읍내 주요 도로 및 주거지 내수침수가 발생함.</li> </ul>	

## 7.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김천리	2024년 ~2028년	40,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위천 제방보축(좌안) L=850m</li> <li>- 교량 재가설(거창교) 1개소</li> <li>- 보 재가설(추평보) 1개소</li> <li>- 우수관거 정비 L=1,000m</li> <li>- 수문일체형펌프 1개소(150m<sup>3</sup>/min)</li> </ul>	

##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편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 전화 : 055) 940-3592
- 팩스 : 055) 940-357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 1. 의견 제출서(서식) 1부(홈페이지 게재).  
2. 지형도면 1부(홈페이지 게재).  
3. 편입토지 세목조서 1부(홈페이지 게재). 끝.